

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084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4년 8월 12일

제출자 : 서울특별시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는 한국사회 정착 등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중도입국청소년을 위한 교육·상담·문화교류 사업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외국인지원시설로,
- 나. 전문기관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이며, 위탁 기간 만료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 및 「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」 제20조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시설 개요

- 소재지 : (교육센터) 영등포구 문래로 164, SK리더스뷰 501호
 - 시설규모 : 문래교육장(765㎡)
 - 주요시설 : 강의실, 강당, 휴게실, 상담실 등
 - 인력운영 : 7명(센터장 1, 교육·문화사업 2, 상담사업 1, 회계·행정 1, 취업지원 1, 주말반 운영 1)
- ※ 운영시간 : 평일 9~18시(주말도 행사 등에 의해 필요시 운영)

나. 주요위탁 내용

- 위탁기간 : 3년(2025. 1. 1. ~ 2027.12.31.)
- 위탁업무
 -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관리·운영 및 사업일체

- 교육지원(한국어/검정고시/학습 멘토링) 및 문화교류를 통한 적응 지원 등 중도입국청소년들의 안정적 한국생활 정착에 필요한 사업
- 상담사업 등을 통한 심리·정서적 안정 지원 등

○ 소요예산 : 676,252천원('25년도)

- 인건비 375,044천원, 사업비 196,217천원, 운영비 104,992천원 등

○ 수탁기관 선정방법 : 공개모집

※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: 적정('24. 7. 19.)

다. 민간위탁 및 재위탁 추진 필요성

- 중도입국청소년의 한국사회 정착 및 지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교육·상담·문화교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운영하는 업무로서,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현장의 경험을 축적한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

-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 및 제 18조의 2

제18조(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)

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의 사회 적응 및 학습능력 향상을 위하여 상담 및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.

1. 「다문화가족지원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
2.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

제18조의2(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)

-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부모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.

3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
○ 서울특별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제4조·7조·18조 및 20조

제4조(시장의 책무)

- ① 서울특별시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하여야 하며,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. 5. 14.>

제4조(시장의 책무)

- 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<개정 2019. 3. 28., 2019. 9. 26.>
 1.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·홍보 등
 2.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·정보제공 및 상담 등
 3. 전문외국인력의 법적 지위 및 처우의 개선에 필요한 제도와 시책 등
 4. 각종 문화·체육행사의 개최
 5. 외국인·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
 6.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·교육사업
 7. 외국인주민의 가족상담, 부부교육, 부모교육,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
 8. 외국인주민 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·지원
 9.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
 10. 외국인 노동자 권익 및 인권 보호
 11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8조(외국인주민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)

-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주민 지원 시설(이하 “지원시설”이라 한다)을 설치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관련 행정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법인·단체의 직원을 지원시설에 파견 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.

제20조(업무의 위탁)

-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·기관에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 및 업무를 위탁한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4., 2017. 1. 5.>
-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연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·점검할 수 있다. <개정 2015. 5. 14., 2017. 1. 5.>

○ 다문화가족지원법 10조

제10조(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)

-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. 〈개정 2015. 12. 1.〉
-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에 대하여 학과 외 또는 방과 후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할 수 있다. 〈개정 2015. 12. 1.〉
-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18세 미만인 사람의 초등학교 취학 전 보육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고, 그 구성원의 언어발달을 위하여 한국어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. 〈개정 2013. 3. 22., 2015. 12. 1.〉
- ④ 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, 「유아교육법」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아동·청소년 보육·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·청소년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〈신설 2015. 12. 1.〉〔제목개정 2015. 12. 1.〕

나. 예산조치 : 2025년도 민간위탁 예산편성 예정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 : 서울시글로벌청소년교육센터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 계획
(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다문화담당관-9947, 2024.6.24.)

※ 작성자 : 글로벌도시정책관 다문화담당관 박윤정 (☎ 2133-8689)